

의안번호	제 329 호
의결년월일	1996. 2. 10. (제 41 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(안)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1996. 1. 19.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329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6. 1. 19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유사 중복된 기능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흡수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본 청 (기능9등, 기능10등) 2명 → 읍면 2명
- 사업소(위생환경사업소 기능10등) 1명 → 본청 1명

3. 본 문

- 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정원의 총수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
1. 본청 : 233명
2. 의회사무기구 : 13명
3. 직속기관 : 92명
4. 사업소 : 17명
5. 읍면 : 290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원의총수) (생략) 1. 본 청 : <u>234명</u> 2. 의회사무기구 : 13명 3. 직속기관 : 92명 4. 사 업 소 : <u>18명</u> 5. 읍 면 : <u>288명</u>	제2조 (정원의총수) (현행과 같음) 1. 본 청 : <u>233명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사 업 소 : <u>17명</u> 5. 읍 면 : <u>290명</u>